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40 | 2026.7.13 (2026.7.6 ~ 2026.7.1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과 국가적 과제인 녹색전환의 뒷받침을 위해 공시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정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의 유사성 판단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7인)」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송영길의원 등 28인)」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산정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

카고크레인 등 실질적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의 연식이나 기사의 연령이 아닌 ‘성능 및 안전 기준’과 ‘건강·운전 적성 검사’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기후위기특위>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정조사특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제1차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7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금융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10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0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3
-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3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1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1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1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1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19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7인)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20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2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2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2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2인)	22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23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송영길의원 등 28인)	23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2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3인)	2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2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2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2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2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2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2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9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29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3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한반도를 넘는 영토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발표
- [자본시장] 중북상장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안) 발표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글로벌리스크대응]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미국의 형리 제재와 중국 대형은행 세컨더리 제재 가능성
- [방송통신(TMT)]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상증세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향
- [에너지·인프라]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26년~35년) 발표
- [방송통신(TMT)] PEGI 기준 개정, DFA 제정 등 유럽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동향 - 주요 변화와 시사점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발표 -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적 공시로드맵 설계 - 기업의 차질없는 공시준비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가동 및 공시유인 제고를 위한 공시정보 활용 확대 추진	2026-07-08
---------	---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現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왔으며, 지난 2.25 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의견수렴안」을 발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의견수렴 결과, 글로벌 기관투자자, 시민·사회단체, 전문직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정보로서의 유용성 측면에서 공시 대상의 확대 등을 요청하였음

이에 당정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과 국가적 과제인 녹색전환의 뒷받침을 위해 공시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정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기로 하겠다고 밝힘

① 공시시기 및 대상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인 주요 코스피상장사가 공시 대상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공시대상을 확대. 당정은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하여, '29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음. 또한, '28~'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하여 '30년 2조원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 연결공시의 제도적 정착률을 도모하기 위해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

② 공시채널 및 면책

공시는 '28년(FY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이와 함께, 공시책임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도입 초기 3년간은,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단호하게 물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

③ 제3자 인증

법정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시 제3자 인증도 제도화. 다만, 국내외적으로 인증 관련 실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 인증범위·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의무화 일정에 맞추어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해나갈 예정

④ 스코프3 유예 및 공시기준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Scope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를 면제하는 의견수렴안을 유지

한편, 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거래소 자율공시도 활성화. 법정공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이 KSSB 공시기준을 적용하여 공시하고자 경우 등에도 거래소를 통해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거래소 자율공시 체계를 정비하여 지원

금융위원회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총실의무 기반 5대 의무 부과하고, 중복상장 맞춤형 엄격·구체적인 심사기준 도입
- 모회사 투자자 보호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모회사 주주동의 권고,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동의 필수
- 주주동의 수준은 3%를 준용하고, 주주동의를 받은 경우 주주보호 노력 요건 충족 추정

2026-07-07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제·개정안 예고)을 시작했다고 밝힘.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금지하기 위해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상장심사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음. 동 기준은 (1)중복상장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상장기준에 더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특례 심사기준이며, (2)상법상 이사의 주주총실의무를 기반으로 홍콩·대만 등 해외 중복상장 규율, 미국 델라웨어 판례 등 글로벌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했음. 또한 (3)모회사 주주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모회사 이사회 또는 주주가 중복상장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후 거래소가 그 판단을 존중하여 최종 심사하도록 하여,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모회사 이사회 또는 주주가 1차적 판단을 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1) 중복상장 규율의 적용범위

중복상장 규율의 범위는 모회사가 상장된 가운데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비상장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 구체적으로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연결재무제표 대상)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 수직적 지배관계 판단은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다시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손자·증손자 등)를 기준으로 함

(2) 모회사 이사회 의무

먼저 모회사 이사회에 대해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를 부과. (1)모·자회사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2)자회사주식 현물배당, 자사주소각 등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3)모회사 이사회는 영향평가·보호방안을 토대로 주주와 소통하여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함. 그리고 (4)최종적으로 이사회 찬·반결의를 수행한 뒤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5)의무이행 사항을 단계별로 공시하도록 함

(3)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

엄격하고 구체적인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을 도입. 먼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영업·경영의 독립성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함. (1)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2)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모회사로부터 이루어진다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3) 구체적인 모회사 투자자 보호 요건도 신설. 먼저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찬성 결의가 이루어졌어야 함. 이와 함께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상응하는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하였는지도 심사. 이때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주동의이므로, 주주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권고됨. 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여 3%를(3% 초과 의결권 제한, 참석 지분의 과반 동의, 전체 의결권 대비 1/4동의)을 적용하여 판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국방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10-08 시행 예정

「방위사업법」에 따라 무기체계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과 기술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중견 방위산업체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와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된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7-07 시행
----------	--	---------------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01-08 시행 예정
----------	---	------------------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7-01-08 시행 예정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01-08 시행 예정

현행법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바,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불이행 시 제재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2027-01-08 시행 예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해·위험물질로서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08. ~2026.08.18.

2011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후 유지되어 온 기준금액(500억원)을 경제·안보상황 변화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전력지원체계는 현행 500억원 기준을 유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사업의 착수 지연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요건, 검토사항, 관계기관 의견요청권, 취급기술 변경 시 재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①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제21조의2 개정)

- 무기체계의 경우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신규사업으로 상향,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신규사업 유지

②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시, 승인 절차 구체화 (제64조의3 개정)

- 신원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90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방사청장이 승인 시 검토해야할 사항 적시
-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요청권을 신설하고, 취급하는 방산기술의 변경·추가 시 재승인 받도록 명시

※ 문의처 : [국방부 전력정책과 \(전화: 02-748-5674\)](#)

국방부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08. ~2026.08.18.
-----	-------------------------------	-----------------------------

「방위산업발전법」개정('26. 3. 10.)으로 방위사업청의 지원범위가 단순한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금융지원의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원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업체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방부 전력정책과 \(전화: 02-748-56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2026.07.06.
~2026.08.18.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인정·관리·지원 기준을 체계화하고 기업의 연구역량 혁신과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2026년 2월 1일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조직 및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핵심 인력인 ‘기업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등에 대한 지원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기업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의 주역인 기업연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혁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mailto:research@kita.go.kr) (전화: 044-202-4732, 팩스: 044-202-6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2026.07.09.
~2026.08.18.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대상 (안 제36조의2)

- 법률 개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규정을 제49조제1항에서 제36조의2제2항으로 이동하고,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함

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대상 및 업무 확대 (안 제36조의7)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할 수 있는 임원에 업무집행자 등을 추가하고 CISO 업무에 정보시스템 도입 시 보안성 검토·승인, 수탁업체 등에 대한 보안수준 점검 및 감독 권한을 추가함

③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신설 (안 제36조의10)

-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대상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④ 정보보호수준 평가 대상 신설 (안 제36조의12, 안 제36조의13)

- 정보보호수준 평가 대상자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자로 정하고,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기준 등을 구체화함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실효성 강화 (안 제47조, 제49조의2 등)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심사 방식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강화된 인증기준 및 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화함.

⑥ 침해사고조사위원회 신설 (안 제58조의2~제58조의5)

- 침해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회의의 소집 및 의사·의결정족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을 신설함

⑦ 침해사고의 통지 신설 (안 제58조의8)

-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 또는 중단이 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전화: 044-202-6468, 팩스: 044-202-6037)

산업통상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2026.07.08.
~2026.08.1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의 유사성 판단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첨단·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복귀 개념과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① 해외 사업장이 제조업인 경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제1항)
- ②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 외에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 ③ 첨단 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면제 적용대상을 사업장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핵심제조시설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의2)

④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함 (안 제5조의4)

⑤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대상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문의처 :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mailto:산업통상부_해외투자과) (전화: 044-203-4095, 팩스: 044-203-471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06.
~2026.08.18.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존 화물차주의 적용 범위를 자동차 운송, 곡물·사료 운송, 택배 지·간선 운송 및 유통배송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적용되거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화물차주 및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mailto:고용노동부_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전화: 044-202-8949, 팩스: 044-202-8949)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6.
~2026.08.18.

현행 법령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는 등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책 내용으로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의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는 이주자 지원대책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게 주민의 고용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주민의 고용 추천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공공주택사업처럼 지역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주자 지원대책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의 고용 추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mailto:국토교통부_산업입지정책과) (전화: 044-201-366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2026-07-08 발의

상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 유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회사의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러나 특별배임죄는 회사법상 의무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혼재시켜 법체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보호에 관한 책임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민사적 책임과 내부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임원의 책임은 회사법의 원리에 따라, 형사책임은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각각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622조 삭제)**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2026-07-08 발의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들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며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려는 것임 (안 제355조제2항 단서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2026-07-10 발의

현행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반면, 분양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행사하는 구상권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기초한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시효 구조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담보책임 소송이 장기화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이미 분양자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실제 소송에서 현실화되고 있음. 그 결과 분양자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에 구상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이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원리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날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양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026-07-07 발의

현행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후 결제일까지의 시차 동안 해당 결제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는 확정된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여 사실상 무위험 대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는 이러한 대출 금리의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72조제2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2026-07-08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등 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 (안 제39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2026-07-07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사업화시설 투자비 등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자국 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 또한, 벤처·스타트업 등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시설투자 및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7인)

2026-07-07 발의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및 불용액은 매년 6조원 정도 발생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 그럼에도 최근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되어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세 부담 증가는 대출금리 및 보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함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2026-07-06 발의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에 대해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 체계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문제의 음원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공식 결정·고시하기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이로 인해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해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통·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 기관의 장 포함)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유해 음원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7항 및 제8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2026-07-08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되,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고지·표시 의무를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고지·표시 의무가 완화되는 경우 작품 단위로 1회 고지·표시 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법문상 관련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사업자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 등 단순한 보조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사용까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31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2026-07-10 발의

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우주·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기술이전·사업화,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2항제4호·제5호, 제1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2026-07-06 발의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발매된 음원의 가사 등이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설치된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단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유해매체물이 유통되는 문제가 있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청소년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음원을 발표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반등유통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음반등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유해한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음반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7-10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특수한 상권이 형성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업 등 특정 영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심사는 지역적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전국 단위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행정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선량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특구 본연의 기능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74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2인)

2026-07-07 발의

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3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특허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특허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꼽히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28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7-07 발의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있어,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 신청 위주의 상향식 방식만으로는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통합특별시’를 현행법상 자치단체 규정에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72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송영길의원
등 28인)

2026-07-07 발의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 규모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성장가능성 또한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영세사업자 위주의 산업 구조, 수출과정에서 품질관리 미흡, 해상운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2026-07-08 발의

현행법은 같은 취지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부재 등으로 불법 수익 환수와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며, 위반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도피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고액 과징금 체납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위반금액(위반물품 등의 판매금액 또는 수출입신고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산정하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규모에 비례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액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납기 전 징수 및 압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3인)

2026-07-06 발의

1961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I 및 IV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들어 Schedule I 은 유지하고, Schedule IV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대마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마약류이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한편,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치료제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전량 수입·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약가에 따른 환자 치료기회 저하 문제와 대외정세 불안정에 따른 필수의약품 국내 공급망 불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 등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마재배자와 구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마 재배 단계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추출·정제 등 제조 및 원료 배정**까지 국가 주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2026-07-06 발의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7-07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129조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2026-07-07 발의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3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2026-07-08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적 처우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 처우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 (안 제29조의2)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2026-07-08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하도록 함 (안 제15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2026-07-09 발의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레미콘·타워 크레인·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사용 제한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2026-07-10 발의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온실가스 다배출 대기업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조업 등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대응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인력·기후정보 및 저감기술 등의 기반이 취약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 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49조 및 제55조)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2026-07-06 발의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속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곤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배달 산업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운행과 법규 위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부착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제작·수입 단계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단속 및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되, 세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전면부 구조 및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아울러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제1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7-07 발의

최근 건설 현장에서 카고크레인 등은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핵심 장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대여업자들이 부도와 도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또한,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와 원수급인이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을 통해 건설기계의 연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의 조종기사에 대해 현장 출입을 관행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손실과 기술 단절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카고크레인 등 실질적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와 지급보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장비의 연식이나 기사의 연령이 아닌 ‘성능 및 안전 기준’과 ‘건강·운전 적성 검사’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조종사의 실질적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68조의3, 제68조의5, 제68조의6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6-07-08 발의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에 따라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관한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을 기재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건설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공사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적정한 공사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도급계약서’는 산출내역서를 부속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님

이에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의4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2026-07-09 발의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의료·복지·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17일 제정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예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사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통합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은퇴자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도시 인프라 등의 활용이 제한되고, 사업 간 중복 투자 및 기능 분절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은퇴자마을지구와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 개발사업의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은퇴자마을사업이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2026-07-09 발의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2026-07-10 발의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배터리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소비자는 차량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배터리는 대여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이용 방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러한 배터리 대여형 사업모델의 도입이 어렵고, 관련 사업체계에 관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초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7/15(수) 14:00	- 법안 상정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	7/15(수) 14:30	- 법안 심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	7/14(화) 10:00	- 제1차 청문회(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관련)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7/13(월) 10:00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고동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3(월) 10:00	지역특화작목 2.0 도약을 위한 지역주도 성장전략	김선교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4(화) 10:00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백혜련·이언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7/14(화) 14:00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박상혁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5(수) 10:00	AI 시대 의료혁신 생태계와 미래도시 전략	송기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5(수) 10:00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김소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5(수) 14:00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이강일·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7/15(수) 14:00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토론회	서천호·문금주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15(수) 16:00	ILO 제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정혜경·이용우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7/16(목) 10:00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고동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7/13(월)	「금주의 보고서」 제2026-25호(통권 제57호)	국회도서관	
	7/15(수)	「금주의 서평」 제2026-27호(통권 제786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7/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3호(통권 제301호)	국회도서관	
	7/8(수)	「금주의 서평」 제2026-26호(통권 제785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7/7(월)	방송통신(TMT)	한반도를 넘는 영토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발표
7/7(화)	자본시장	중복상장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안) 발표
7/8(수)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8(수)	글로벌리스크대응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미국의 형리 제재와 중국 대형은행 세컨더리 제재 가능성
7/9(목)	방송통신(TMT)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7/9(목)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상증세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향
7/9(목)	에너지·인프라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26년~35년) 발표
7/10(금)	방송통신(TMT)	PEGI 기준 개정, DFA 제정 등 유럽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동향 - 주요 변화와 시사점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